용역계약 특수조건

제1조(목적) 이 용역계약특수조건(이하 “특수조건”이라 한다)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(이하 “일반조건”이라 한다)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제3조(신의성실 의무)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제4조(계약이행 및 관리책임)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“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”를 다하여야 한다.
②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·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, 근로기준법, 산업재해보상법,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.
제5조(용역수행)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, 용역책임자와 참여 요원의 이력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,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②발주처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 제시, 문제점 지적,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③발주처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제6조(인력의 투입 및 교체, 업무감독) ①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.
②계약상대자는 발주처 감독자의 정당한 용역업무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가 협의하여 시행한다.
③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 요원에 대한 수요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 하에 그 요원을 교체하여야 하며,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④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요원의 채용,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.
제7조(자료제공 및 기술지원) ①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를 발주처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.
③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.
제8조(과업내용의 추가, 변경 및 해석) ①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계약담당이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.
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③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제5

항에 의하여 처리한다.
④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간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. 다만, 계약상대자에게 중대한 부담이 되는 사안은 쌍방합의하에 의하되,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.
제9조(검사)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 용역 발주처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발주처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②발주처는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상대자의 비협조 또는 준비부족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.
제10조(지체상금) ①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.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.
②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.
제11조(선금의 지급) ①“발주처”는 “계약상대자”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지급 특수조건에 따라 채권확보 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.
②“발주처”는 계약금액의 50% 이내의 선금에 대하여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

제12조(대가의 지급) ①계약이행 완료 후 “계약상대자”는 4주 이내에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제출하여야 하며, “발주처”는 내용을 검토 후 용역비 비목별로 증감, 정산한다.
②제1항의 정산액은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③제4조에 따른 검수 및 제1항에 따른 정산을 완료한 후, “발주처”는 “계약상대자”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.

제13조(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)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감액, 환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“발주처”는 해당 금액을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지급할 잔여 지급액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, 잔여 지급액이 없을 경우에는 “계약상대자”는 “발주처”에게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제14조(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)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. 만약,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.
제15조(소유권 등)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처가 가진다. 다만,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.
제16조(타 법령의 준용 등)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간의 협의에 의한 해당 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, 계약예규 및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.